오픈뱅킹공동업무 추진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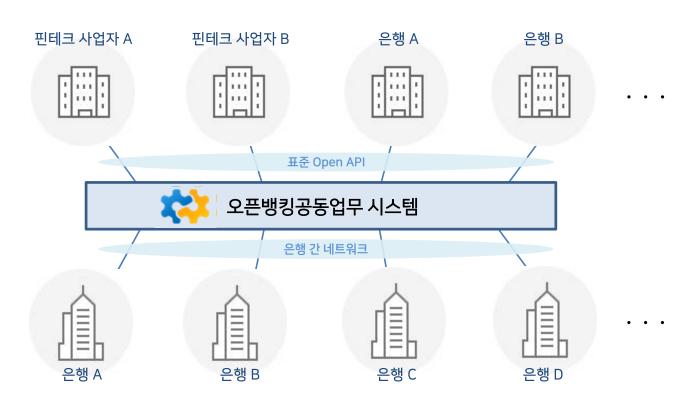
목차

- 1. 오픈뱅킹공동업무 개요
- Ⅱ. 세부 이용절차

I . 오픈뱅킹공동업무 개요

1. 오픈뱅킹공동업무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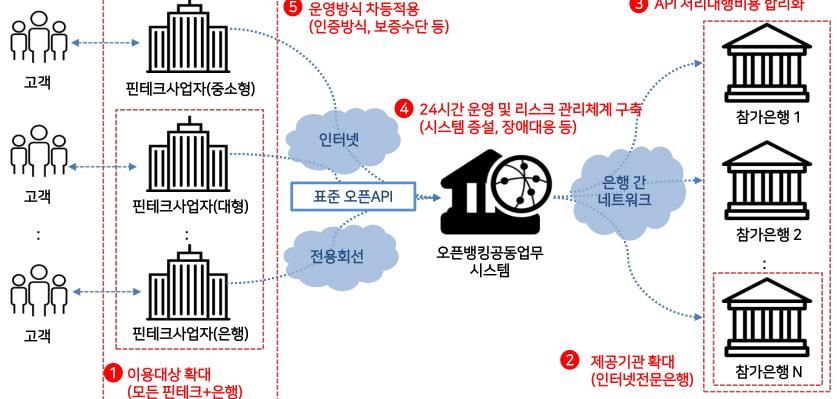
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의 개방형 인프라



오픈뱅킹 시스템 접속 만으로 전체 참가은행(18개) 접속 효과

2. 주요 사항

③ API 처리대행비용 합리화 5 운영방식 차등적용 (인증방식, 보증수단 등) 4 24시간 운영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(시스템 증설, 장애대응 등) 참가은행 1 인터넷 은행 간 네트워크 표준 오픈API



개념도(TO-BE)

3. 제공서비스 및 제공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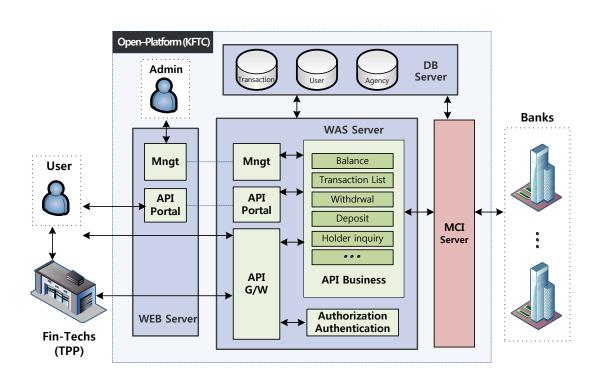
• 제공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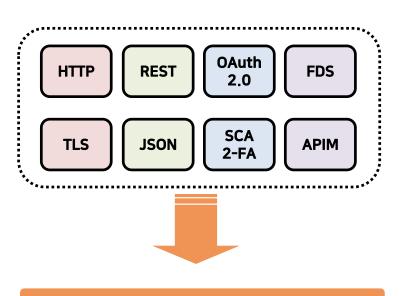
구분		설 명	
	잔액조회	고객이 이용기관의 제공서비스를 통하여 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	
ᆽ히	거래내역조회		
꼬꾀	조 회 계좌실명조회	이용기관이 고객 계좌의 정상여부 및 성명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	
	송금인정보조회	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의무이행을 위하여 송금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	
OI 눼	입금이체	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	
이 체	출금이체	출금에 동의한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집금할 수 있는 서비스	

• 제공기관

- 현행 일반은행(16개)에서 인터넷 전문은행(케이뱅크, 카카오뱅크)까지 확대
 - ※ 향후 저축은행, 상호금융권(농협중앙회 등) 추가 참여 추진예정

4. 시스템 구성 및 기술기반





" 국제적인 기준(PSD2)에 근접한 표준화 및 보안체계로 구현 "

Ⅱ . 세부 이용절차

이용 절차 요약



① 이용승인 :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센터 담당자가

관련 승인규정에 따라 이용(제외)대상 여부, 사업모델의 적정성 등 적합여부 확인 후 승인

② 기능테스트: 센터 담당자가 핀테크 서비스의 단위기능이 정상 동작하는 지 기능테스트 수행

③ 보안점검 : 지정된 보안점검기관을 통해 보안성 강화를 위한 이용기관 보안점검 및 핀테크 서비스

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센터가 최종 검토

④ **계약체결** : 주거래은행 선정, 수수료 책정, 이용한도 설정, 보증한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

센터와 이용기관 간 계약체결

⑤ 서비스 실시 : 센터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서비스 실시

Ⅱ .1. 이용 승인

1.1. 이용승인 절차

- ① (이용신청) 이용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
 - 관련서류 제출(이용신청서, 서비스 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)



- ② (이용적합성 심사) 센터 담당자가 「이용기관 승인기준」을 토대로 심사
 -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및 서비스 계획서 검토 등 심사 진행



- ③ (이용적합성 승인) 담당자는 이용적합성 승인결과를 신청사업자에 통지
 - 신청한 사업자에 후속 절차(기능테스트 및 보안점검 등)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

1.2. 사전 이용신청 현황

• 현재 오픈뱅킹 사전 이용신청 접수 중

(2019.8.29 기준)

구분	신청기업(개)
대형 사업자	24
중소형 사업자	54
은행	18
합 계	96

1.3. 사전 이용신청 관련 참고사항

- ① 19년 12월말 이전에 오픈뱅킹 이용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지 여부
 - 시스템 구축 일정상 19년 12월말부터 서비스 실시 가능
- ② 테스트 등 개발관련 지원 일정
 - 9월 23일부터 오픈뱅킹 테스트베드 페이지를 통해 개발 및 테스트 지원 예정
- ③ 신청서 접수 후 승인까지 소요 기간
 - 미비사항이 있을경우 즉시 보완 요청, 특이사항 없을 경우 승인까지 약 1주일 소요
- ④ 사전신청 접수 마감일
 - 연내 서비스 실시 희망 시 <mark>9월까지 제출 요망</mark> (이후에도 이용신청 가능)
- ⑤ 수수료납부계좌 등 약정계좌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
 - —계약시 변경이 가능하며, 계약완료 후 변경시에는 계약변경 필요(계약변경 승인일로부터 2영업일 소요)

1.4. 이용기관 승인 기준(이용 대상)

- 은행1) 또는 핀테크2) 사업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금융위원회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3)
 -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
 - 오픈뱅킹 운영기관(금융결제원) 인정 기업

이용대상

- 주1) 오픈뱅킹공동업무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 금융회사
 - 2) 정보통신기술 또는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(또는 기여가 예상되는) 금융관련 업무('18.11.27, 금융위원회)
 - 3)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('은행 혁신성 평가 매뉴얼' 참고)

업종명	내용	업종명	내용
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보안프로그램, OS, DBMS개발 등	자료 처리업	자료입력, 전환처리 등
응용S/W 개발 및 공급업	회계용 S/W, CRM, ERP개발 등	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 서비스업	온라인포털, 정보제공 등
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	홈페이지, 맞춤형 S/W개발 등	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	학습, 증권정보제공 등
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	컴퓨터시스템통합, SI업체 등	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	외국환, 어음교환 등
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	데이터, 컴퓨터장애복구 등		

1.5. 이용기관 승인기준(제외대상 및 제외서비스)

- ·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상 사행행위기업, 부도기업
- · 게임머니·아이템 중개 또는 가상화폐⁴⁾ 관련 사업모델 기업
- · 다단계 판매, 상조회사, 대부업 (P2P포함)
- · 미풍양속 저해,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(자금세탁, 테러자금조달 등)
- · 이용기관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모델 상 필요자격 미달기업
- · 영업 행태에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의심되는 기업
- · 기타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 등

제외대상

- · 출금대행⁵⁾
- · 납부서비스⁶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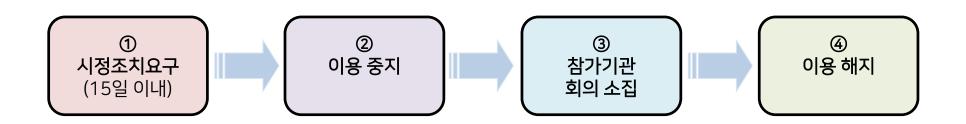
제외서비스

- 주4) 가상화폐 발행(ICO 포함) 또는 거래소 운영 등을 영위하는 기업
 - 5) 지급인의 출금동의를 수취인을 통해 전달받아 제3자가 출금을 대행하거나 동 권리를 재판매하는 경우
 - 6) 수납하려는 주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·반복적으로 추심(예약)하는 경우

1.6. 이용중지 및 해지

• 이용기관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용 중지 또는 해지 가능 (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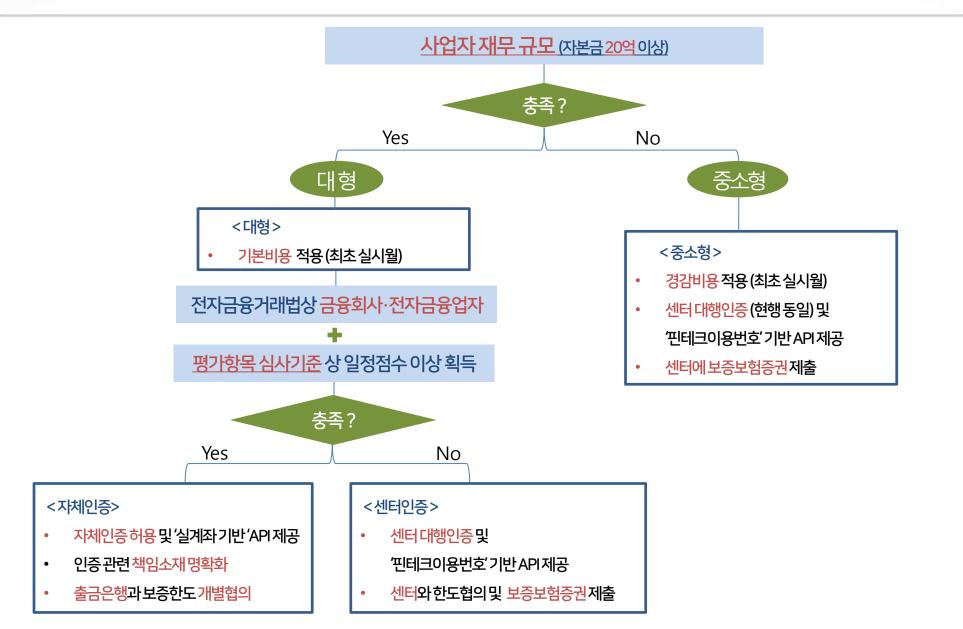
- ·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내용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
- ·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출금한 경우
- · 이용기관 수수료 미납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
- · 이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하위사업자 포함)
- · 이용 제외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- ·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지권고가 있는 경우
- · 참가은행으로부터 해지요청이 있거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등



1.7. 하위사업자 관리

- 이용기관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인 경우에만 하위사업자(결제모듈 재판매) 허용 (단, 출금대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)
 - 예) B쇼핑몰에 A페이가 결제모듈로 제공될 경우, B쇼핑몰 고객은 A페이의 고객이어야 하며 A페이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고객에게 직접 출금동의를 받아야 함 (A페이에 대한 고객의 명시적 인지가 필요)
- 이용기관은 하위사업자를 자체적으로 충실히 관리하여야 하며, 관련 사고 발생시 처리주체(책임 포함)는 해당 이용기관임을 인지할 필요 (하위사업자 관리부실의 경우 해당 이용기관 제재)
- 최초 실시 시점에는 이용기관이 자체 점검 하에 서비스를 개시하되, 하위사업자가 자체 점검리스트 상 제외대상 해당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, 센터에서 확인 (이후 하위사업자 매 신규 시마다 하위사업자 리스트, 점검결과를 센터 제출 및 사전 승인 필요)
- 이용기관의 이체 API 호출 시 센터에 하위사업자 정보(사업자명, 사업자번호 등) 추가제공 필요 (세부사항은 API 명세서 참조)

1.8. 이용기관별 차등 운영



1.9. 자체인증 평가항목

• 재무건전성, 사업안정성,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8가지 항목에 대하여 평가

	평가항목		내용
	기업신 용등 급	20	외부전문 신용평가 사이트를 통해 신용정보 확인
재무 건전성	납입자본금	10	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
	연간 매출액	10	기업 재무제표 상 매출액 항목(최근 1년간)
	회사업력	10	법인등기부등본 상 전자금융 관련업 영위기간
사업 안정성	회원 수	20	이용기관 제공 서비스의 회원 수
	관련자격 보유여부	10	전자금융업 업종별 관련자격 보유 여부
리스크	AML시스템 운영	10	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
관리	고객민원 대응체계	10	고객민원 대응체계 운영 여부
	-	100	-

★ 평가 결과 60점 이상일 경우 이용기관의 자체적인 인증을 허용할 예정

1.10. 자체인증 평가항목 세부기준(1) (예시)

• 기업 신용등급(20점)

등급	AAA	AA	Α	BBB	BB	В	ССС	СС	С	D	NG
점수		20점		15	점	10)점	5	점	0	점

• 납입 자본금(10점)

구분	30억 미만	30~50억 미만	50~70억 미만	70~100억 미만	100억 이상
점수	0점	2점	4점	7점	10점

• 연간 매출액(10점)

구분	20억 미만	20~50억 미만	50~100억 미만	100~400억 미만	400억 이상
점수	0점	2점	4점	7점	10점

• 회사 업력(10점)

구분	2년 미만	2~3년 미만	3~4년 미만	4~5년 미만	5년 이상
점수	0점	2점	4점	7점	10점

1.10. 자체인증 평가항목 세부기준(2) (예시)

• 회원 수(20점)

구분	1만명 미만	1~10만명 미만	10~50만명 미만	50~100만명 미만	100만명 이상
점수	0점	5점	10점	15점	20점

• 관련 자격 보유여부(10점)

구분	금융회사, 선불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	기타 전자금융업
점수	10점	0점

• AML 시스템 운영(10점)

구분	AML 시스템 미운영	AML 시스템 운영
점수	이용 불가	10점

• 고객민원 대응체계(10점)

구분	고객민원 대응체계 미존재	고객민원 대응체계 존재
점수	0점	10점

Ⅱ .2. 기능 테스트

2.1. 기능테스트 절차

- ① (서비스 개발) 개발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도구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
 - API 명세서, 개발가이드와 샘플소스 등을 활용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



② (자체테스트) 시뮬레이터를 통해 단위기능에 대하여 충분한 자체 테스트 수행



- ③ (기능테스트) 센터 담당자가 신청사업자의 핀테크 서비스 기능을 최종 테스트
 - 신청한 사업자가 제출한 기능테스트 신청서에 따라 정상동작 여부 최종확인

2.2.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

'개발자 사이트(테스트베드)

https://developers.openbanking.or.kr



- 오픈뱅킹 API 개발 지원도구 및 가상 시뮬레이터 제공, 개발자 포럼을 통한 기술지원 등
- 간편가입 후 테스트 API 키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API 개발 및 테스트 가능
- 자체 테스트가 완료되면 개발자사이트에서 센터 담당자에게 기능점검 요청
- 오픈뱅킹 관련 테스트 API 이용 가능 : 9월말 예정

2.3. 오픈뱅킹공동업무 Open API (REST방식)

기능구분	API명	URI	HTTP Method
	사용자로그인연결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oauth/2.0/authorize	GET
사용자 인증 (OAuth 2.0)	AccessToken획득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oauth/2.0/token	POST
(0/44112.0)	등록계좌 확인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oauth/2.0/authorize_account	GET
	사용자정보조회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user/me	GET
	사용자로그인연결 동의해제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user/unlink	POST
	등록계좌조회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account/list	GET
사용자/계좌 관리	계좌정보변경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account/update_info	POST
	계좌해지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account/cancel	POST
	사용자 탈퇴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user/close	POST
	사용자계좌등록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user/register	POST
	잔액조회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account/balance/fin_num	GET
조회서비스	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account/balance/acnt_num	POST
(사 용 자)	고게비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account/transaction_list/fin_num	GET
	거래내역조회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account/transaction_list/acnt_num	POST
	大 つ O I 컨 I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transfer/withdraw/fin_num	POST
	출금이체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transfer/withdraw/acnt_num	POST
이체서비스	01701+11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transfer/deposit/fin_num	POST
	입금이체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transfer/deposit/acnt_num	POST
	이체결과조회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transfer/result	POST
조회서비스	계좌실명조회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inquiry/real_name	POST
(이용기관)	송금인정보조회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inquiry/remit_list	GET
관리 API	참가기관 상태조회	https://openapi.openbanking.or.kr/v2.0/bank/status	GET

※ 테스트 API 주소 : https://testapi.openbanking.or.kr

Ⅱ.3. 보안 점검

3.1. 보안점검

구분	이용기관 보안점검	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
개요	이용기관의 운영환경 전반에 대한 보 <mark>안관리체계</mark> 점검	개발한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
점검내용	이용기관 운영환경 전반 (시스템, 설비, 인력 등)에 대한 점검	중요정보 노출여부, 금융거래 정보 위변조 방지 여부 등 점검
점검시기	오픈뱅킹 이용 서비스 실시 전	오픈뱅킹 환경에서 개발 및 테스트 완료 후

3.2. 보안점검 절차

- ① (점검기관 안내 및 신청) 보안점검에 대해 센터에서 관련절차 안내 및 이용기관의 점검신청
 - 보안점검기관과 점검시기 협의, 점검신청서 작성 및 발송, 제출물 전달 등



- ② (점검수행) 신청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 또는 보안관리체계 점검수행
 - 신청사업자에 제출물 설명(보완)요청, 보안취약점 또는 이용기관 점검 수행



- ③ (결과확인 및 피드백) 점검결과 검토 및 후속조치 수행
- 센터는 점검결과 검토 후 신청한 사업자에 미흡부분 보완요청 및 이후 절차 안내

Ⅱ.4. 계약 체결

4.1. 계약 절차

① (주거래은행 협의) 신청사업자는 주거래은행 선정 후 수수료 책정 요청 및 서류제출



② (수수료 확정) 주거래은행과 신청사업자 간 최종 수수료 확정



③ (서류검토 및 계약준비) 제출서류 검토, 이용한도 및 보증수단 설정 등 계약 준비



④ (계약체결) 신청사업자와 센터 간 최종 계약체결

4.2. 이용기관 수수료(1)

이용기관 수수료

<mark>=</mark> 처리대행비용(고정)

주거래은행 수수료(자율)

+

- 처리대행비용
-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한 주거래은행이 오픈뱅킹 처리대가로 상대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고정비용 (거래은행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)
- 대형 이용기관(자본금 20억원 이상) 이용시작 첫 월부터 기본비용 부과
- 중소형 이용기관(자본금 20억원 미만)은 이용시작 첫 월부터 경감비용을 부과하고, 해당 API의 경감기준을 3개월 연속 초과할 경우 기본비용 부과

4.2. 이용기관 수수료(2)

<오픈뱅킹 처리대행비용 조정안^{주)} (이체 API 기준) >

78	성해 비오	기보비오	겨가비요	경감기준 ²⁾	
구분	현행 비용	기본비용	경감비용	거래금액(월)	거래건수(월)
출금이체 API	500원	50원	30원	100억원	10만건
입금이체 API	400원	40원	20원	II	11

주) 경감기준 산정기간 : (M-3월) 00:00 ~ (M-1월) 말일의 전일 24:00

※ 은행권 실무협의 사항으로 최종수준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결정

• 주거래은행 수수료

- 이용기관과 주거래은행이 <mark>자율적</mark>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
- ※ 주거래은행: 오픈뱅킹은 이용기관과 센터 간 단일계약 방식
 - 이용기관 당 하나의 주거래은행을 이용하고, 해당 은행 내 다수의 약정계좌 운용가능(최대 100개)
 - 18개 참가은행이 동일한 기능(계좌관리, 수수료 수취) 제공

4.3. 센터 보증 (중소형 및 센터인증 대형 사업자)

- 센터를 통하여 일 출금한도에 대한 보증보험 징구
- 평가 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<mark>가감산</mark>하여 <mark>종합점수를 산정</mark>하고 이를 보증보험 기준에 반영 (기준한도 200%, 최저 100% ~ 최고 300%)
- 감산(-) 기준: 재무 건전성, 사업 안정성, 리스크 관리
- 가산(+) 기준: 리스크 관리, 보안기준

종합점수	보증보험 기준(일 출금한도)
~ -100점	100%
~99 ~ -51점	150%
~50 ~ 50점	<u>200%</u>
51 ~ 99점	250%
100점~	300%

4.4. 센터 보증한도 산정 기준

• 재무건전성, 사업안정성, 리스크 관리, 보안기준 측면에서 12가지 항목에 대하여 평가

평가항목		(%p)	내용	
		기업신용등급	20	외부전문 신용평가 사이트를 통해 신용정보 확인
	재무 건전성	납입자본금	20	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
		연간 매출액	20	최근 1년간 매출(수입) 실적
감산		회사업력	10	전자금융업 등 관련업 영위기간
(-)	사업 안정성	서비스 기간	10	서비스 실시 기간(기존 펌뱅킹 포함)
		회원 수	20	이용기관 제공 서비스의 회원 수
		거래건수	20	최근 1년간 거래건수(기존 펌뱅킹 포함)
	리스크 관리	관련 자격보유 여부	30	전자금융업 등 관련자격 보유 여부
	리스크 관리	고객민원 대응체계	20	고객 민원 대응체계 미운영 시
가산	니스그 한다	AML 시스템 운영	20	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미운영 시
(+)	ㅂ아기즈	서비스 취약점 점검	10	보안점검기관의 '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' 미흡항목(항목 당)
	보안기준	인증절차 강화	30	계좌소유인증(1원 이체) 적용 여부

4.5. 센터 보증한도 산정 세부기준(1) (예시)

• 감산(-) 세부기준

• 기업 신용등급(20점)

등급	AAA	AA	Α	BBB	BB	В	CCC	СС	С	D	NG
점수	20점		15	i점	10)점	5	점	0;	점	

• 납입 자본금(20점)

구분	20억 미만	20~50억 미만	50~100억 미만	100~200억 미만	200억 이상
점수	0점	5점	10점	15점	20점

• 연간 매출액(20점)

구분	20억 미만	20~50억 미만	50~100억 미만	100~500억 미만	500억 이상
점수	0점	5점	10점	15점	20점

• 회사 업력(10점)

구분	2년 미만	2~3년 미만	3~4년 미만	4~5년 미만	5년 이상
점수	0점	2점	4점	7점	10점

4.5. 센터 보증한도 산정 세부기준(2) (예시)

• 서비스 기간(10점)

구분	2년 미만	2~3년 미만	3~4년 미만	4~5년 미만	5년 이상
점수	0점	2점	4점	7점	10점

• 회원 수(20점)

구분	1만명 미만	1~10만명 미만	10~50만명 미만	50~100만명 미만	100만명 이상
점수	0점	2점	5점	10점	20점

• 거래건수(20점)

구분	10만건 미만	10~100만건 미만	100~500만건 미만	500~1,000만건 미만	1,000만건 이상
점수	0점	2점	5점	10점	20점

• 관련 자격 보유여부(30점)

구분	선불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	기타 전자금융업, 소액해외송금업	미등록
점수	30점	10점	0점

^{*} 자격 중복보유 시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

4.5. 센터 보증한도 산정 세부기준(3) (예시)

• 가산(+) 세부기준

• 고객민원 대응체계(20점)

구분	고객민원 대응체계 미존재	고객민원 대응체계 존재
점수	20점	0점

• AML 시스템 운영(20점)

구분	AML 시스템 미운영	AML 시스템 운영
점수	20점	0점

• 핀테크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미흡 시(항목당 10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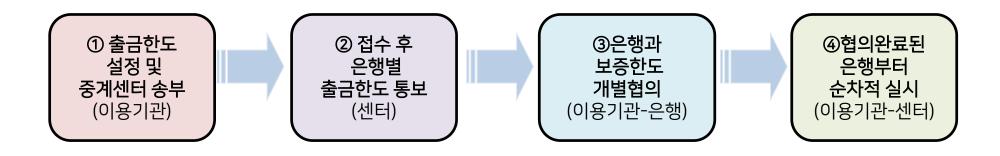
구분	점검결과 상 미흡 항목
점수	항목당 10점

• 인증절차 강화(30점)

구분	계좌소유인증 미적용	계좌소유인증 적용
점수	30점	0점

4.6. 개별은행 보증 (자체인증 대형사업자)

- 자체 인증이 허용된 대형 사업자의 경우, 출금은행과 보증한도 개별협의 진행(출금이체 API)
- 개별은행 협의절차



- 센터의 <mark>개별협의 요청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</mark>에 전체 은행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, 협의가 완료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출금이체 업무 실시 (기타 조회 및 이체 업무는 선 실시 가능)
- 정해진 기한 내 하나의 은행과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
 기존 절차대로 센터 협의 및 보증한도 설정 가능

Ⅱ.5. 기타 사항

5.1. 기타 사항(1)

- 다양한 센터 인증 및 동의방식을 지원할 예정
 - 중소형 사업자를 위한 센터의 대행인증 및 동의방식, 인증수수료 체계 등을 다양화하여 해당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사용 고객의 편의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예) 고객인증 (SMS인증, 1원이체 인증, 바이오인증 등), 추심동의 (ARS녹취, 클라우드 기반 공인인증서 등)
 - * 기존에 API 처리비용에 포함되어있던 대행인증 비용(SMS,ARS 등)은 별도로 분리 청구 예정 ('19.12월 본격 실시일부터)



5.2. 기타 사항(2)

• 다양한 신규 API 지원 예정

- 실계좌기반 API: 대형사업자 대상의 실계좌번호 기반 API (잔액, 거래내역, 출금이체 등)
- 수수료 조회 API : 이용한 API의 수수료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API
- 통계 조회 API : 일별 서비스별 이용건수 및 금액, 출금한도 등을 조회할 수 있는 API
- 사용자 탈퇴 API: 고객의 탈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API 등

• 접속회선

- OpenAPI 기본 취지에 따라 오픈뱅킹 시스템 접속 시 인터넷회선 사용 원칙 (단, 금융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용회선으로 접속)

6. 향후 일정

• 연내 은행권 시범실시와 핀테크 사업자 본격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빠르게 진행 중

- 이용대상 기관 앞 사전 이용신청서 접수 중(7월 24일~)
- * 초기 이용신청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내 실시를 원할 경우 9월까지는 신청 필요
- 사전 이용신청 기관 대상 보안점검 진행(본격실시 전 약 2개월 소요 예상)
- 이용대상 기관과의 표준 약관/계약서 등 제정(~10월)
- 제공대상 기관 확대 시행(~10월)
- 시범서비스 실시(10월~, 은행권 부터)
- 본격서비스 실시(12월~, 참여희망 이용대상 기관)

"감사합니다"

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 오픈뱅킹팀 openbanking@kftc.or.kr